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70호 2019. 5.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54호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자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5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38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439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
- 삼척시 공고 제441호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30
- 삼척시 공고 제445호 제210회 삼척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37
- 삼척시 공고 제447호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통보 공시송달 공고 ----- 38
- 삼척시 공고 제44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42
- 삼척시 공고 제454호 삼척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5
- 삼척시 공고 제456호 제201회 삼척시의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 52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9 - 54 호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자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용연1지구)의 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 등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삼척시장

1. 고시내용

- 가.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남부지사
- 나. 사업지구 명칭 : 용연1지구
- 다.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 용연1지구 :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 147번지 일원 (164필 / 1,892천㎡)
- 라. 대행업무 :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2. 고시일자 및 방법

- 가. 고시일자 : 2019. 05. 17.
- 나. 고시방법 : 시보

3. 참고사항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부서 (☎033-570-3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5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292-27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3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292-27	20190517		20090626	행정구역명복합활용 (고천리,내미로리)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1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63-20	20190517		20090626	역사인물이승휴의호 (동안)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476-2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17 (정상동)	20190517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활용도로명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33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090-19	20190517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주소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계	4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638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고내로 282-27	20190517		20090626	행정구역특별합용(고창리,내미로리)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리 31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269-20	20190517		20090626	역사민물이승휴미조(동리)합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476-2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17 (정상동)	20190517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여내노도구간의주요방장동(정상동)명칭합용도로명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기곡면 풍곡리 330	강원도 삼척시 기곡면 청옥로 4090-19	20190517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합용	

삼척시 공고 제2019 -438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안 제4조)
- 나. 수탁자의 의무(안 제8조)
- 다. 양도 및 전대금지(안 제9조)
- 라. 운영비 지원(안 제10조)
- 마. 위탁의 취소(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 화 : (033) 570-3353 ○ FAX : (033) 570-3140
- 전자우편 : hongok14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치 및 명칭)”을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의 위치는”을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제2호 중 “취업정보제공”을 “취업정보제공,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의 관리)”를 “(관리 및 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근로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며, 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중 “일반시민(저소득층 주민 우선)”을 “일반시민”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로, “순서에 의한다”를 “순서로 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10조) 제5항 중 “관리·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부담한 재해보험료나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다만, 시장”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 등 시장”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4조 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 제1항 중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을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를 “사항을 관련”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6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위치 및 명칭) ①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중앙로 38에 둔다.</p> <p>② 복지회관 명칭은 근로자 및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p>	<p>제2조(위치) ① ----- ----- 한다)은 ----- -----.</p> <p><삭 제></p>
<p>제3조(기능)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p> <p>3. 4. (생략)</p>	<p>제3조(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취업 정보제공, 취업훈련 -----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설의 관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 안의 헬스장, 유희시설, 회의실, 사무실 등 이에 부대되는 설비 및 비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등의 종류별 규모에 따라 적절한 관리인을 확보 배치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근로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며, 위탁 기간 등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p>

<p>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p> <p>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3. 복지회관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p> <p>③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p>	<p>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사람에게는 ----- -----.</p> <p>1. ---- 환자</p> <p>2. ----- ----- 사람</p> <p>3. ----- ----- 사람</p> <p><삭 제></p>
<p>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저소득층 주민 우선)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p> <p>②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저소득층 주민, 일반시민 순서로 허가하며, 같은 조건일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한다.</p>	<p>제7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 ----- 일반시민----- ----- 사람으로 하며,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p> <p>②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 ----- ----- ----- ----- ----- ----- - 순서로 한다.</p> <p><삭 제></p>
<p>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를 위한 공단 및 비영리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p>	

으로 위탁 또는 임대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및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관리·운영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한 위탁 또는 임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략)

⑤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 등에 대한 관리·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관리·운영 할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 등 시장-----.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부담한 재해보험료나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부담한 재해보험료나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삭 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때에는 제8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2. 3. (생략)
- 4. 제14조제2항의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제13조(자체운영규정) 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규정 제정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관리·운영사항을 조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 등 시장-----.

- 1. ----- 제8조-----
- 2. 3. (현행과 같음)
- 4. 제13조제2항-----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감독) ① -----

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 사항을 관련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제명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9 - 439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안 제7조)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 화 : (033) 570-3353 ○ FAX : (033) 570-3140

○ 전자우편 : hongok14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삼척시 규칙 제 호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교부 한다”를 “교부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규정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특별설비”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 규정에 의거”를 “제4조에 따라”로, “별표 1의 위탁관리계약서를”을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로, “이를”을 “계약사항을”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와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 1. 사용 시설명 :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3. 사 용 목 적 :
- 4. 참석예정인원 : 명
-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 6. 기 타 사 항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직업 (단체명) :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1. 주 소 :
 직 업(단체명) :
 성 명 : 생년월일 :
- 2. 변경내역
 가. 변 경 전 :
 나. 변 경 후 :
- 3. 년 월 일 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서

-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2. 사용 시설 :
- 3. 사용 목적 :
- 2. 사용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5. 사용료

사용 시설명	사용료	산출 기초	비고

6. 허가 조건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2. 변경허가 내역 :
○ 변경전 :
○ 변경후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 관리 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복지회관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 관리 연장신청서

신청인(법인, 단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간	당초	~	연장	~
사유				

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하는 복지관 위탁 관리 운영기간을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 필요-----.
제2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한다.	제3조(사용허가) ----- ----- ----- ----- ----- ----- 다른 ----- 교부 한다.
제4조(특별설비) ① (생략) 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에 따라 ----- 특별설비----- ----- -----
제7조(위탁관리) <신설>	제7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신설>

시장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표 1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 위탁 관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제4조에 따라 -----

-----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
-- 계약사항을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규칙제명 :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공고 제2019-441호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삼척시장

1. 모집분야: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제37조 4항에 해당하는 분야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모집인원: 12명
3. 위촉기간: 2019. 7. 1. ~ 2021. 6. 30.(2년, 3회까지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나.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사람)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인 사람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바.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정기회의, 수시회의)할 수 있는 자

※ 참고사항

- 관내 현업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및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단, 인력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소속 단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6.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 이력서
 - 나.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관련 양식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http://www.samcheok.go.kr) > 시정소식 > 입법/공시/공고 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2019. 5. 17. ~ 5. 31. (14일간)
-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다. 접 수 처: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296 (교동) 삼척시청 도시과(별관 1층)
- 라. 참고사항
 - 우편 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8. 심사 및 통지: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가. 공개모집 지원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3회까지 연임 및 비 연임기간 제외 6년까지 수행 가능)이고,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 바. 위원회 명단이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5~7)로 문의 바람.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번호	위원회명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응모분야	사진 소명함판 (3cmX4cm)
성명	(한글)	성별	남	생년월일		
	(한자)		여			
주소	(자택)		전화번호	직장		
	(직장)			자택		
				휴대폰		
				E-mail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현근무지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자격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1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목적을 불문하고 당해 응모가 무효가 됨은 물론 향후 5년간 응모가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5. .						
지원자 성명				(인)		
삼척시장 귀하						

이 력 서

1.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3.연락처	자택 :		직장 :		휴대폰 :
4.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5.직업군	공무원(), 투자기관·공단·연구소(), 학계(), 건설·용역업체(), 기타()				
6.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 . .				
	. . .				
	. . .				
7.학 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구분	졸업구분
	. . .				
	. . .				
	. . .				
8. 전공분야			세부전공 ①	②	
9. 경력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경력

	연구년도	소속기관	과제명	총수행기간	역할
10.연구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11.저서 및 논문	제출일	출판사·관련학회	논 문 명	주 요 내 용	참여자수

공개모집 지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1. 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2. 지원서 작성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공개모집 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 ② "응모분야" 는 해당 모집 분야명 기재
 - ③ "주소"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 및 거주하는 곳의 우편번호와 주소 기재
 - ④ "연락처"는 직장, 자택, 휴대폰, 이메일 기재
 - ⑤ "학력"은 대학졸업부터 작성하고 전공(세부전공 포함), 학위구분(학사, 석사, 박사) 및 졸업구분(졸업, 수료)을 정확히 기재
 - ⑥ "자격증"은 당해분야 취득자격을 정확히 기재(사본 첨부 제출)
 - ⑦ "경력현황"은 당해분야 주요경력을 기재하며, 강원도 내 18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력사항은 반드시 기재
 - ⑧ "연구수행 실적" 및 "저서 및 논문"은 해당되는 지원자만 작성

추천서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상기인을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19. 5. .

소속(기관)장 (인)

삼척시장 귀하

삼척시 공고 제2019-445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삼척시장

제2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전략사업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세무과)
3. 2035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안(도시과)
4. 삼척시 마을회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삼척시 공고 제2019-447호

공시송달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규정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05. 13.

삼척시장

1. 처분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통보
2. 처분 대상자

허가번호	대지위치	허가자	허가목적	비고
개발행위 (건축협의) 2017-243	원덕읍 옥원리 14번지 외 15필지	(주)동*이앤씨 (삼척시 원덕읍)	대지조성사업 부지조성	

3. 처분의 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4. 처분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5. 공고기간: 2019. 05. 14. ~ 2019. 06. 03.
7. 게시장소: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8. 기타사항: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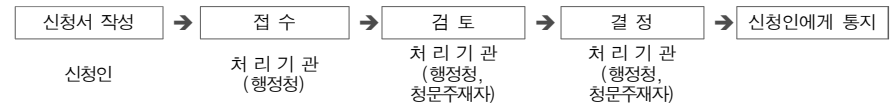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청문주제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제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삼척시청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9-44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거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5.13. ~ 2019.05.27.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5.28.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허정○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07-13 시멘트블록조 (1층:76.56㎡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13.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19 - 454호

삼척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다자녀가구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 : 제42조 제8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상수도사업소
- 전 화 : (033) 570-3521 ○ FAX : (033) 570-3170
- 전자우편 : terete@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 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가정용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9,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9]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중수도 설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시설개요	건물명		동수 및 층수
	위치		
	사업비		
	사업기간		
<p>삼척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삼척시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수도 설계도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중수도 사용계획서 			

[별표 10]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해지()			
수용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수도전번호		연 락 처	
신청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자녀가정 감면()			
<p>「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p> <p>삼 척 시 장 귀하</p>				
<p>※ 주의사항</p> <p>1. 상기 감면신청서 작성대상자 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함.</p> <p>2. 요금감면 대상자의 신분변동(전입, 전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함.</p>				
<p>첨부서류</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p> <p>다자녀가정 감면 : 주민등록등본 1부.</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6의 기준대상에 적합하여야 하며, <u>별표 7부터 별표 9까지</u> 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요금 등의 감면)----- ----- ----- ----- <u>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가정용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수도 사용량의 12세제곱미터 이상 사용량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가구별 자체정산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8. ~ 9. (생략)	9. ~ 10. (현행 제8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9-456호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6.

삼척시장

제21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1.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